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351
----------	-----

제출년월일 : 199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수정이유

제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이사회 구성문제등 일부조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

(안 제5조제2항)

나. “이사는 4인이상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를 두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이사는 5인이하로 두되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

(안 제8조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사는 5인이하로 두되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당 초 안	수 정 안
제5조(정관) ① (생략)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시장의 승인을 얻어</u> <u>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u> <u>한다.</u>	제5조(정관) ①(현행과 같음)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사전 의회의 의견을</u> <u>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u> <u>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u> <u>야 한다.</u>
제8조(이사) ① <u>이사는 4인이상의</u> <u>상임 및 비상임이사를 두되 그</u> <u>수는 정관으로 정한다.</u> ② (생략) ③ (생략)	제8조(이사) ① <u>이사는 5인이하로</u> <u>두되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u> <u>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u> <u>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u> <u>정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이하“자본금”이라 한다)은 5억원이내로 하고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 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이사장) ①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이사) ①이사는 5인이하로 두되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감사) ①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감사는 상임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와 여건을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③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이사회) ①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3 장 사 업

제13조(사업) ①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3. 제1호의 부대사업
4.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5.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공단은 시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대행할 수 있으며, 인건비,부대경비등을 시에서 부담하고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 4 장 제 무 회 계

제14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5조(예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계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공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여유자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 5 장 감 독

제20조(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한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년도는 공단설립 일로부터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파주시 아동동 신31번지에 두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둔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이내로 하고 파주시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출자는 현금 및 현물로 하되 출자의 금액,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③자본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광고방법) 공단의 공고할 사항은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파주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2.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및 관리
3. 제1호의 부대사업
4. 시장이 설치한 각종시설 (회관 포함) 및 시설물 위탁 관리
5. 시장이 위탁한 경영수익 사업
6.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7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8조(규정의 제정) ①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공단의 이사는 5인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와 감사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한다.

③임원중 이사장과 이사1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이사는 시 간부공무원이나 전문가로 한다.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당연 직 감사로 한다.

제10조(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 유고시 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유고시 비상임 이사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하며 이를 별도 규정으
로 정한다.

제13조(임·직원의 복무) 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에서 정한 각종 규정에 따
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②공단의 임·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
임할 수 있다.

1. 조례, 규칙, 정관에 의한 직무명령을 위반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3. 심신의 장애등으로 업무수행이 심히 곤란할 때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공단의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규정이 정하는 보수와 기
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비상임 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
요한 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신분보장)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20조(조직) ①공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총무부, 관리부를 둔다.

②기구는 “별표1”, 정원은 “별표2”와 같이 하며 직제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1조(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21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사항은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사록의 비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서명날인 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제 무 회 계

제25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결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계리의 원칙) 이사장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장의 승인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경영평가) ①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무상사용) 시장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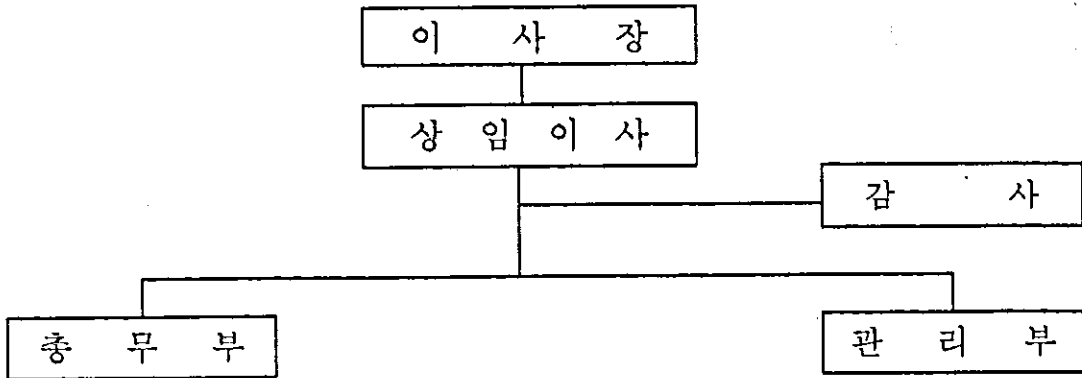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년도의 예산) 공단의 설립년도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 표 1

기 구 표



별 표 2

정 원 표

구 분	계	이사장	이사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계	30	1	1	15	2	5	6	2	13	1	6	4	2
총무부	부 계	8		5	1	2	2		1				1
	이 사 장	1	1										
	이 사	1		1									
	행 정	5		5	1	2	2						
	사무보조	1							1				1
관리부	부 계	22		10	1	3	4	2	12	1	6	4	1
	행 정	4		4	1	2	1						
	행정·사서	6		6		1	3	2					
	전 기	1							1		1		
	통 신	2							2	1	1		
	기 계	1							1		1		
	난 방	1							1			1	
	운 전	5							5		2	3	
	주차관리	1							1		1		
	사무보조	1							1				1